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27조제5항).
-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제2항).
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안 제55조제4호의2).

II. 검토의견

1.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관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구체화 필요(안 제27조제5항 후단)

- 안 제27조제5항 전단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항 후단은 ‘신고한

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'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,

현행법은 허가·등록의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전부 정하도록 하지 않고 그 내용의 대강을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의 소재지, 수입처 등으로 그 일부를 예시하고 있고, 개정안은 이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
구체적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예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(제품명 등)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제27조제5항 후단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27조(허가 등) <신설>	제27조(허가 등)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	제27조(허가 등)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7조(허가 등)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**중요한 사항**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**중요한 사항**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2. 과징금 부과 및 영업장 폐쇄조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전문판매업 포함 필요(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제2호)

- 안 제27조제5항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, 안 제32조제2항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<안 제32조제1항 및 제1항>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2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시·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</u>

- 그런데 개정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(법 제45조)이나 영업 허가·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(법 제46조)의 대상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,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45조(과징금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제46조(폐쇄조치 등) ②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제32조제1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,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·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	제45조(과징금) ① (현행과 같음) 제46조(폐쇄조치 등) ②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	제45조(과징금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·제2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제46조(폐쇄조치 등) ②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2. 제32조제1항·제2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,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,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·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

3.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 필요(안 제55조제4호의2 및 제56조제1호)

- 안 제55조제4호의2는 ‘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
방법으로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'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

안 제56조제1호는 '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'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,

현행법은 허가·등록업의 경우 허가과 변경허가, 등록과 변경등록을 구분하지 않고,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,

신고업의 경우에도 현행법의 다른 규정의 체계에 맞추어 신고와 변경신고 모두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함.

<안 제55조제4호의2 및 제56조제1호에 대한 수정의견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5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5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	제55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5. ~ 8. (생략) 제5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u><신설></u> 1. ~ 6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 제56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 <u>1.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전문판매업을 한 자</u> 2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 제56조(벌칙)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제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2.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5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 4.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의2.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을 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

4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같은 조문 내 문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성완)